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명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33

발의연월일: 2025. 3. 21.

발 의 자:서명옥·서천호·박준태

진종오 · 김상훈 · 배준영

김예지 · 김용태 · 고동진

조경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, 그 기간 동안 환자들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 해야함.

반면, 영국은 항암제기금(Cancer Drug Fund, CDF)과 희귀의약품기금(Innovative Medicine Fund, IMF)을 운영 중이며 이탈리아는 제약사 판촉비 5%와 정부재원으로 희귀질환 약제의 기금 운영 등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.

이에 복권기금을 '암관리기금'과 '희귀질환관리기금'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암 및 희귀질환 치료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, 환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실질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자 함(안 제23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서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9231호)와「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 호 제9230호),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23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 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 본문 중 "100분의 35"를 "100분의 37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2. 「암관리법」에 따른 암관리기금
- 13. 「희귀질환관리법」에 따른 희귀질환관리기금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)	제23조(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)
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<u>10</u>	① <u>100</u>
<u>0분의 35</u> 는 다음 각 호의 기금	<u>분의 37</u>
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	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복	
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	
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	
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	
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	
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	
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	
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.	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2. 「암관리법」에 따른 암관
	<u>리기금</u>
<u><신 설></u>	13. 「희귀질환관리법」에 따른
	희귀질환관리기금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